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1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손 솔
정혜경 · 임미애 · 정춘생
한창민 · 용혜인 · 김영배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로, “10억원”을 “5억원”으로, “12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년”을 “15년”으로, “30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00억원”을 “7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 다)에서 <u>10억원</u> 을 공제하고 세 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 <u>20억원</u>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 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 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 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u>10년</u>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u>300억 원</u>	1. ----- <u>5억원</u> ----- ----- <u>20억원</u> -----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u>400억 원</u>	2. ----- ----- <u>70억원</u> -----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u>600억원</u>	3. ----- ----- <u>100억원</u>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

납부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

가. -----10년간-----

-----100분의 90-----

나. -----10년간-----

(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u>100</u>분의 <u>70</u>에 미달하는 경우 4. (생략) ④ ~ ⑨ (생략)	----- ----- ----- ----- -----<u>100</u> <u>분의 100</u>-----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